

25. '96年度 代替造林費 賦課基準單價

山林廳告示 第1996-1號 1996. 1. 5

산림법 제20조의2 제3항 및 산림법시행령
제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'96년
도 대체조림비 부과기준단가를 다음과 같
이 고시합니다.

대체조림비 부과기준단가 : 1제곱미터당
800원

행한다.

②(적용례)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접수되
어 처리중인 “보전임지전용허가·협의
와 산림형질변경허가등(의제·배제의
경우 포함)”에 대한 부과단가는 이 고
시에 의한다.

③(폐지고시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
림청고시 제95-1호('95.1.3.)는 이를 폐
지한다.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

공기보다 품질생각 이익보다 기술생각